|  |
| --- |
| **위 임 장** |
| **수 임 인** | **성 명** |  |
| **주 소** |  |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 정창섭 사무소에서 공증인법 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에 의한 다음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 내용의 공정증서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행위를 허락하며, 정본 및 등본의 수령권한을 위임함.** |
| **액 면** |  **금 원정 (₩ )** |
| **발 행 일** |  **20 년 월 일** | **발 행 인** |  |
| **지급기일** |  **20 년 월 일** | **수 취 인** |  |
| **발 행 지** |  |  |  |
| **지 급 지** |  |  |  |
| **지급장소** |  |  |  |
|  **20 년 월 일** |
| **위 임 인** | **성 명****주 소** | (인) |
| **위 임 인** | **성 명****주 소** | (인) |
| **위 임 인** | **성 명****주 소** | (인) |
| **위 임 인** | **성 명****주 소** | (인) |